

# 연천군 사무의 읍·면위임규칙

[ 전문개정 1994. 8. 11  
규칙 제810호 ]

- 일부개정 1994. 10. 20 규칙 제 814호
- 일부개정 1998. 9. 23 규칙 제 910호  
(연천군 행정조직조례시행규칙)
- 일부개정 2001. 12. 24 규칙 제1010호
- 전문개정 2006. 11. 6 규칙 제1123호
- 일부개정 2017. 5. 17 규칙 제1374호
- 일부개정 2019. 3. 4 규칙 제1444호  
(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- 일부개정 2020. 12. 24 규칙 제1501호  
(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- 일부개정 2021. 12. 24 규칙 제1516호  
(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연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4항에 따라 읍·면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 5. 17, 2021. 12. 24>

**제2조(위임사항)** 경기도지사가 연천군수에게 위임한 사무 중 읍·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. <개정 2017. 5. 17>

**제3조(감독)**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연천군수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·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. <개정 2017. 5. 17>

**제4조(권한과 책임의 표시)**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.

[전문개정 2017. 5. 17]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5. 17 규칙 제1374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. 3. 4 규칙 제1444호,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** 생략

**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** ① 부터 ㉓ 까지 생략

㉔ 연천군 사무의 읍·면 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소관실과란 중 “복지지원과”를 “사회복지과”로 한다.

부칙 <2020. 12. 24 규칙 제1501호,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** ① 및 ② 생략

③ 연천군 사무의 읍·면 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소관실과란 중 “도시주택과”를 “건축과”로 한다.

부칙 <2021. 12. 24 규칙 제1516호,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** ① 연천군 사무의 읍·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04조”를 “제117조”로 한다.

② 생략

[별표] <개정 2020. 12. 24>

위임사무명(제2조 관련)

| 소관<br>실과   | 일련<br>번호 | 위임사무명   | 근거법규  | 수임<br>기관 |
|------------|----------|---|---|----------|
| 사 회<br>복지과 | 1        | ○ 경로당 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<br>• 경로당설치신고            | 「노인복지법」<br>제37조제2항<br>같은 법 시행규칙<br>제25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| 읍·면장     |
|            | 2        | • 경로당폐지(휴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「노인복지법」<br>제40조제3항<br>같은 법 시행규칙<br>제30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| 읍·면장     |
|            | 3        | • 경로당 등록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「노인복지법」<br>제43조제2항  | 읍·면장     |
| 건설과        | 1        | ○ 하천관리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<br>• 권리·의무의 승계 등          | 「하천법」 제5조   | 읍·면장     |
|            | 2        | ○ 지방 1,2급 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<br>• 토지의 점용 및 기간연장 허가 | 「하천법」<br>제33조제1항제1호 및<br>같은 법 시행령<br>제34조<br>같은 법 시행규칙<br>제19조제4항 | 읍·면장     |
|            | 3        | • 하천시설의 점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「하천법」<br>제33조제1항제2호<br>같은 법 시행령<br>제34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읍·면장     |
|            | 4        | •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「하천법」<br>제33조제1항제6호<br>같은 법 시행령<br>제35조제1항제2호                     | 읍·면장     |
|            | 5        | •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「하천법」 제37조<br>같은 법 시행령<br>제44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읍·면장     |

| 소관<br>실과 | 일련<br>번호 | 위임사무명   | 근거법규  | 수임<br>기관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| 6        | ○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<br>•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   |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읍·면장             |
|          | 7        | • 점용료·사용료의 징수 및 조정, 변상금의 징수, 권리·의무이전  |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읍·면장             |
|          | 8        | • 점용·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, 공익을 위한 처분, 원상 회복 등   |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읍·면장             |
| 건축과      | 1        | ○ 옥외광고물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무<br>• 옥외광고물 중 돌출간판·공연간판·벽면이용간판·애드벌룬 등의 표시 신고 수리 및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|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조<br>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10조   | 읍·면장<br>(연천읍장제외) |
|          | 2        | •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(다만, 읍·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광고물에 한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<br>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8조  | 읍·면장<br>(연천읍장제외) |
|          | 3        | •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 |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<br>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내지 제43조 | 읍·면장<br>(연천읍장제외) |

| 소관<br>실과 | 일련<br>번호 | 위임사무명  | 근거법규  | 수임<br>기관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---|
| 건축과      | 4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의 취소</li> </ul>  |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                 | 읍·면장<br>(연천읍장제외) |
|          | 5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허가·신고·안전도 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(다만, 읍·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광고물에 한함)</li> </ul> |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                 | 읍·면장<br>(연천읍장제외) |
|          | 6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태료의 부과·징수</li> </ul>   |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0조<br>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| 읍·면장<br>(연천읍장제외) |